주안역 미추홀 더리브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 안내 사항]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주안역 미추홀 더리브의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http://www.michuhol-theliv.com)을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홍보관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방문 시 방문 인원은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 기간 내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체온이 37.5℃가 넘을 경우(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 운영 예정)
-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본주택 내 상담전화(☎ 1811-0005)를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 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 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 07. 16.**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1주택 이하(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기간 내에 있는 자는 본 아파트의 청약이 불가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자발표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인천시 미추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 본 아파트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전용면적 85 ㎡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85 ㎡ 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30%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 07. 16.)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증여,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565호 부칙 제3조)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변경)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기존)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변경)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 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 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ichuhol-theliv.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① 1순위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②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각각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 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①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1년

②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

③ 제①호, 제②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등

- 전매 : 해당건설지역(인천광역시)은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기간 내에 있는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다만,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향후 1순위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청약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7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조정대상 주택의 1순위자로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7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요청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건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 거래의 신고

- 2020.2.21.부터 개정·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함).
-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 주택건설지역인 인천시 미추홀구는 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액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유로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시 자기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당 아파트의 도면 및 마감재 목록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승인일(2019.06.25.)과 현 분양시점의 주택·건축관련 제 법률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 1순위(당해)	일반 1순위(기타)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07월28일(화요일)**	**07월29일 (수요일)**	**07월30일 (목요일)**	**07월31일(금요일)**	**08월06일(목요일)**	**08월17일(월요일)~08월19일(수요일)**
방법	인터넷청약(08:00~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가능)	견본주택 방문 (10:00~16:00)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PC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PC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PC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택관리과-29068호(2020.07.1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377-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9,497.88㎡**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 지상 27층, 5개동, 총 34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기관추천 32세대/다자녀 32세대/신혼부부 65세대/노부모부양 9세대) 포함>**

[단위:㎡,세대]

구분	59	74A	74B	84A	84B	84C	84D	84E	98	108	합계
총세대수	26	52	51	102	104	1	1	2	4	2	345
일반	26	52	51	102	104	1	1	2	4	2	345

■ **입주시기 : 2023년 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아파트코드)	모델	주택형(주거전용면적기준)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지하주차장등)	합계(계약면적)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일반(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소계		
민영 주택	2020000840	01	59.9316	59	59.9316	25.8696	85.8012	35.7103	121.5115	9.9299	26	2	2	5	1	10	16	2
		02	74.4711A	74A	74.4711	31.4307	105.9018	44.3737	150.2755	12.3390	52	5	5	10	1	21	31	2
		03	74.3004B	74B	74.3004	32.2084	106.5088	44.2720	150.7808	12.3107	51	5	5	10	1	21	30	2
		04	84.9035A	84A	84.9035	35.2597	120.1632	50.5899	170.7531	14.0675	102	10	10	20	3	43	59	3
		05	84.8397B	84B	84.8397	34.7079	119.5476	50.5519	170.0995	14.0569	104	10	10	20	3	43	61	3
		06	84.1594C	84C	84.1594	36.9568	121.1162	50.1465	171.2627	13.9442	1	-	-	-	-	-	1	-
		07	84.7266D	84D	84.7266	37.8225	122.5491	50.4845	173.0336	14.0382	1	-	-	-	-	-	1	-
		08	84.0764E	84E	84.0764	36.4440	120.5204	50.0970	170.6174	13.9304	2	-	-	-	-	-	2	-
		09	98.4426	98	98.4426	41.7533	140.1959	58.6571	198.8530	16.3107	4	-	-	-	-	-	4	-
		10	108.9315	108	108.9315	45.9347	154.8662	64.9070	219.7732	18.0486	2	-	-	-	-	-	2	-
	합 계										345	32	32	65	9	138	207	12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시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 x 0.3025 또는 ㎡ ÷ 3.3058)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또는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대지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경미한 설계변경, 확정측량 등으로 인하여 다소의 증감이 있을수 있으며, 증감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약식 표기)	동	공급 세대수	층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 (10%) 계약시	중도금(60%)						잔금 (30%) 입주지정기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대지비	건축비	VAT	합계		2021.02.09	2021.07.12	2021.12.12.	2022.05.22.	2022.10.19.	2023.03.18	
59	102동	26	1	1	87,600,000	217,500,000		305,100,000	30,510,000	30,510,000	30,510,000	30,510,000	30,510,000	30,510,000	30,510,000	91,530,000
			2	1	88,900,000	220,700,000		309,600,000	30,960,000	30,960,000	30,960,000	30,960,000	30,960,000	30,960,000	30,960,000	92,880,000
			3 ~ 5	3	89,900,000	223,100,000		313,0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31,300,000	93,900,000
			6 ~ 15	10	91,200,000	226,300,000		317,500,000	31,750,000	31,750,000	31,750,000	31,750,000	31,750,000	31,750,000	31,750,000	95,250,000
			16 ~ 26	11	92,600,000	229,900,000		322,500,000	32,250,000	32,250,000	32,250,000	32,250,000	32,250,000	32,250,000	32,250,000	96,750,000
74A	102동 (2호)	26	1	1	107,000,000	265,500,000		372,500,000	37,250,000	37,250,000	37,250,000	37,250,000	37,250,000	37,250,000	37,250,000	111,750,000
			2	1	108,200,000	268,600,000		376,800,000	37,680,000	37,680,000	37,680,000	37,680,000	37,680,000	37,680,000	37,680,000	113,040,000
			3 ~ 5	3	110,400,000	274,200,000		384,600,000	38,460,000	38,460,000	38,460,000	38,460,000	38,460,000	38,460,000	38,460,000	115,380,000
			6 ~ 15	10	112,500,000	279,200,000		391,700,000	39,170,000	39,170,000	39,170,000	39,170,000	39,170,000	39,170,000	39,170,000	117,510,000
			16 ~ 26	11	114,400,000	283,900,000		398,300,000	39,830,000	39,830,000	39,830,000	39,830,000	39,830,000	39,830,000	39,830,000	119,490,000
	102동 (4호)	26	1	1	110,700,000	274,700,000		385,400,000	38,540,000	38,540,000	38,540,000	38,540,000	38,540,000	38,540,000	38,540,000	115,620,000
			2	1	112,500,000	279,200,000		391,700,000	39,170,000	39,170,000	39,170,000	39,170,000	39,170,000	39,170,000	39,170,000	117,510,000
			3 ~ 5	3	113,800,000	282,700,000		396,500,000	39,650,000	39,650,000	39,650,000	39,650,000	39,650,000	39,650,000	39,650,000	118,950,000
			6 ~ 15	10	115,000,000	285,500,000		400,500,000	40,050,000	40,050,000	40,050,000	40,050,000	40,050,000	40,050,000	40,050,000	120,150,000
			16 ~ 26	11	116,700,000	289,800,000		406,500,000	40,650,000	40,650,000	40,650,000	40,650,000	40,650,000	40,650,000	40,650,000	121,950,000
74B	102동 (1호)	26	1	1	106,600,000	264,600,000		371,200,000	37,120,000	37,120,000	37,120,000	37,120,000	37,120,000	37,120,000	37,120,000	111,360,000
			2	1	108,400,000	269,100,000		377,500,000	37,750,000	37,750,000	37,750,000	37,750,000	37,750,000	37,750,000	37,750,000	113,250,000
			3 ~ 5	3	110,300,000	274,000,000		384,300,000	38,430,000	38,430,000	38,430,000	38,430,000	38,430,000	38,430,000	38,430,000	115,290,000
			6 ~ 15	10	112,400,000	279,100,000		391,500,000	39,150,000	39,150,000	39,150,000	39,150,000	39,150,000	39,150,000	39,150,000	117,450,000

			16 ~ 26	11	114,600,000	284,500,000		399,100,000	39,910,000	39,910,000	39,910,000	39,910,000	39,910,000	39,910,000	39,910,000	119,730,000
	102동 (5호)	25	2	1	111,500,000	277,000,000		388,500,000	38,850,000	38,850,000	38,850,000	38,850,000	38,850,000	38,850,000	38,850,000	116,550,000
			3 ~ 5	3	113,800,000	282,500,000		396,300,000	39,630,000	39,630,000	39,630,000	39,630,000	39,630,000	39,630,000	39,630,000	118,890,000
			6 ~ 15	10	115,800,000	287,600,000		403,400,000	40,340,000	40,340,000	40,340,000	40,340,000	40,340,000	40,340,000	40,340,000	121,020,000
			16 ~ 26	11	117,400,000	291,400,000		408,800,000	40,880,000	40,880,000	40,880,000	40,880,000	40,880,000	40,880,000	40,880,000	122,640,000
84A	101동 (1호)	25	2	1	121,600,000	302,000,000		423,600,000	42,360,000	42,360,000	42,360,000	42,360,000	42,360,000	42,360,000	42,360,000	127,080,000
			3 ~ 5	3	124,000,000	307,900,000		431,900,000	43,190,000	43,190,000	43,190,000	43,190,000	43,190,000	43,190,000	43,190,000	129,570,000
			6 ~ 15	10	126,400,000	313,800,000		440,200,000	44,020,000	44,020,000	44,020,000	44,020,000	44,020,000	44,020,000	44,020,000	132,060,000
			16 ~ 26	11	128,700,000	319,400,000		448,100,000	44,810,000	44,810,000	44,810,000	44,810,000	44,810,000	44,810,000	44,810,000	134,430,000
	101동 (4호)	25	2	1	124,400,000	308,900,000		433,300,000	43,330,000	43,330,000	43,330,000	43,330,000	43,330,000	43,330,000	43,330,000	129,990,000
			3 ~ 5	3	126,800,000	314,900,000		441,700,000	44,170,000	44,170,000	44,170,000	44,170,000	44,170,000	44,170,000	44,170,000	132,510,000
			6 ~ 15	10	129,200,000	320,700,000		449,900,000	44,990,000	44,990,000	44,990,000	44,990,000	44,990,000	44,990,000	44,990,000	134,970,000
			16 ~ 26	11	130,600,000	324,200,000		454,800,000	45,480,000	45,480,000	45,480,000	45,480,000	45,480,000	45,480,000	45,480,000	136,440,000
	103동 (1,4호)	52	1	2	120,200,000	298,500,000		418,700,000	41,870,000	41,870,000	41,870,000	41,870,000	41,870,000	41,870,000	41,870,000	125,610,000
			2	2	122,500,000	304,100,000		426,600,000	42,660,000	42,660,000	42,660,000	42,660,000	42,660,000	42,660,000	42,660,000	127,980,000
			3 ~ 5	6	124,600,000	309,300,000		433,900,000	43,390,000	43,390,000	43,390,000	43,390,000	43,390,000	43,390,000	43,390,000	130,170,000
			6 ~ 15	20	126,700,000	314,500,000		441,200,000	44,120,000	44,120,000	44,120,000	44,120,000	44,120,000	44,120,000	44,120,000	132,360,000
			16 ~ 26	22	128,900,000	320,200,000		449,100,000	44,910,000	44,910,000	44,910,000	44,910,000	44,910,000	44,910,000	44,910,000	134,730,000
84B	101동 (2호)	26	1	1	120,700,000	299,700,000		420,400,000	42,040,000	42,040,000	42,040,000	42,040,000	42,040,000	42,040,000	42,040,000	126,120,000
			2	1	123,000,000	305,300,000		428,300,000	42,830,000	42,830,000	42,830,000	42,830,000	42,830,000	42,830,000	42,830,000	128,490,000
			3 ~ 5	3	125,100,000	310,500,000		435,600,000	43,560,000	43,560,000	43,560,000	43,560,000	43,560,000	43,560,000	43,560,000	130,680,000
			6 ~ 15	10	127,400,000	316,400,000		443,800,000	44,380,000	44,380,000	44,380,000	44,380,000	44,380,000	44,380,000	44,380,000	133,140,000
			16 ~ 26	11	129,400,000	321,300,000		450,700,000	45,070,000	45,070,000	45,070,000	45,070,000	45,070,000	45,070,000	45,070,000	135,210,000
	101동 (3호)	26	1	1	123,500,000	306,600,000		430,100,000	43,010,000	43,010,000	43,010,000	43,010,000	43,010,000	43,010,000	43,010,000	129,030,000
			2	1	125,800,000	312,200,000		438,0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131,400,000
			3 ~ 5	3	127,900,000	317,400,000		445,30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44,530,000	133,590,000
			6 ~ 15	10	129,600,000	321,900,000		451,500,000	45,150,000	45,150,000	45,150,000	45,150,000	45,150,000	45,150,000	45,150,000	135,450,000
			16 ~ 26	11	130,500,000	323,900,000		454,400,000	45,440,000	45,440,000	45,440,000	45,440,000	45,440,000	45,440,000	45,440,000	136,320,000
	103동 (2,3호)	52	1	2	120,700,000	299,700,000		420,400,000	42,040,000	42,040,000	42,040,000	42,040,000	42,040,000	42,040,000	42,040,000	126,120,000
			2	2	123,300,000	306,000,000		429,300,000	42,930,000	42,930,000	42,930,000	42,930,000	42,930,000	42,930,000	42,930,000	128,790,000
			3 ~ 5	6	125,400,000	311,200,000		436,600,000	43,660,000	43,660,000	43,660,000	43,660,000	43,660,000	43,660,000	43,660,000	130,980,000
			6 ~ 15	20	127,400,000	316,400,000		443,800,000	44,380,000	44,380,000	44,380,000	44,380,000	44,380,000	44,380,000	44,380,000	133,140,000
			16 ~ 26	22	129,100,000	320,600,000		449,700,000	44,970,000	44,970,000	44,970,000	44,970,000	44,970,000	44,970,000	44,970,000	134,910,000
84C	102동	1	27	1	131,500,000	326,600,000		458,100,000	45,810,000	45,810,000	45,810,000	45,810,000	45,810,000	45,810,000	45,810,000	137,430,000
84D	102동	1	27	1	135,100,000	335,400,000		470,500,000	47,050,000	47,050,000	47,050,000	47,050,000	47,050,000	47,050,000	47,050,000	141,150,000

84E	102동	2														
	(1호)		27	1	130,800,000	324,900,000		455,700,000	45,570,000	45,570,000	45,570,000	45,570,000	45,570,000	45,570,000	45,570,000	136,710,000
	(4호)		27	1	132,800,000	329,800,000		462,600,000	46,260,000	46,260,000	46,260,000	46,260,000	46,260,000	46,260,000	46,260,000	138,780,000
98	101동	2														
	(1호)		27	1	143,100,000	355,400,000	35,540,000	534,040,000	53,404,000	53,404,000	53,404,000	53,404,000	53,404,000	53,404,000	53,404,000	160,212,000
	(3호)		27	1	144,200,000	358,100,000	35,810,000	538,110,000	53,811,000	53,811,000	53,811,000	53,811,000	53,811,000	53,811,000	53,811,000	161,433,000
	103동	2	27	2	143,100,000	355,400,000	35,540,000	534,040,000	53,404,000	53,404,000	53,404,000	53,404,000	53,404,000	53,404,000	53,404,000	160,212,000
108	101동	1	27	1	159,300,000	395,600,000	39,560,000	594,460,000	59,446,000	59,446,000	59,446,000	59,446,000	59,446,000	59,446,000	59,446,000	178,338,000
	103동	1	27	1	157,800,000	391,900,000	39,190,000	588,890,000	58,889,000	58,889,000	58,889,000	58,889,000	58,889,000	58,889,000	58,889,000	176,667,000

■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59.9316	74.4711A	74.3004B	84.9035A	84.8397B	84.1594C	84.7266D	84.0764E	98.4426	108.9315
약식표기	59	74A	74B	84A	84B	84C	84D	84E	98	108

■ 공통 유의 사항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 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자체 심의 결과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호별, 층별, 향별, 일조권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대피공간 등은 제외)기준으로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미 포함된 가격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 등 기타 인허가 사항에 따라 대지면적 및 대지지분에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되,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시기는 공급계약서에 따라 정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당 사업장의 계약금, 중도금 납입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게시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의거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 보증 받은 아파트(공동주택)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0.03.13)에 따라, 당 사업지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에 해당되므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 세대수

구분			59	74A	74B	84A	84B	84C	84D	84E	98	108	합계
일반(기관추천)	장애인		1	1	1	2	2	-	-	-	-	-	7
	국가보훈대상자			1	1	2	2	-	-	-	-	-	6
	장기복무제대군인			1	1	2	2	-	-	-	-	-	6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1	2	2	-	-	-	-	-	7
	중소기업근로자			1	1	2	2	-	-	-	-	-	6
다자녀가구	인천지역거주자(50%)		1	3	3	5	5	-	-	-	-	-	17
	경기도,서울시 거주자(50%)		1	2	2	5	5	-	-	-	-	-	15
신혼부부	소득기준	우선공급(75%)	3	7	7	15	15	-	-	-	-	-	47
		일반공급(25%)	2	3	3	5	5	-	-	-	-	-	18
노부모부양자			1	1	1	3	3	-	-	-	-	-	9
합계			10	21	21	43	43	-	-	-	-	-	13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 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상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견본주택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 (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3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 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입주선정 결과는 개별통지 하지 않고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시 발표하며,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1세대내 무주택 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만 가능)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시 둘 다 무효 처리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등)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16.)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table>
<tr><td></td><td>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td></tr>
<tr><td>청약자격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16.)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분</th><th>인천광역시</th><th>서울특별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r><td>전용면적 85㎡이하</td><td>250만원</td><td>30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이하</td><td>400만원</td><td>6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이하</td><td>700만원</td><td>10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 면적</td><td>1000만원</td><td>15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td></tr>
</table>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32세대

<table>
<tr><th colspan="2">신청 자격</th><th>당첨자 선정방법</th></tr>
<tr><td>대상자</td><td>•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td><td rowspan="2">•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자격요건</td><td>•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추천기관
①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 국가보훈처 인천지방보훈청 복지과
②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③ 중소기업근로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④ 장애인 : (인천광역시)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경기도)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
⑤ 도시재생 부지 제공자 :인천시청 도시재생정책과</td></tr>
</table>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32세대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이혼 및 재혼 자녀의 경우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와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거합니다.	• 해당지역(인천광역시에 0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의거 다자녀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인천광역시 포함)에게 공급합니다. • 인천광역시 거주자 잔여 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도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인천광역시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 적용되지 않습니다.(신청미달이 발생하는 잔여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합니다.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 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0	
		1년 이상~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 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 **65세대**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출생신고일 기준)하며, 임신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 신고일이 적용됩니다.)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합니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입양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 ~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 ~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 ~ 130%이하)]을 선택하셔야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 9인이상 가구 소득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1.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 증빙서류로 준용합니다.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4.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합니다.
5.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6.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 관련 제출서류

해당자격		구비사항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지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 으로 발급)	①해당직장 ②세무서
	신규취업자/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①, 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①, 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국민연금가입자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③ 국민연금미가입자 : 최근의 부가가치세 정신고서(부본)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당
	법인사업자	① 법인등기부등본(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③ 사업자등록증	①, 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업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①, ② 세무서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③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및 위촉(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③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근로자 / 일용직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 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2019.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① 견본주택 ② 해당 세무서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 07. 16.)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합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72호(2018.5.8.)]에 따릅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이내) : 9세대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릅니다.
자격요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3항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자가 우선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인천시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인천시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청약 신청 시 아래 “청약신청 유의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등을 확인 바랍니다.
청약신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른 1순위자 중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도 1순위 가점제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적격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 청약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 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향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접수를 받습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하되,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합니다.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합니다.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합니다.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점수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됩니다.)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 시간 이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85㎡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75%, 추첨제 25%.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30%, 추첨제 70%.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청약신청 시 추첨제 100%로 청약 접수합니다.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및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구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
전용면적 102㎡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 · 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됩니다.)
		6월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소유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전용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3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 · 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 · 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분양권등을 포함한다)이며,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 · 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① 현재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됩니다.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해당 소형 ·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을 간주)

※ 소형 · 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 · 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09.01.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4.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다자녀가구, 신혼부부,노부모부양	**2020.07.28(화요일)**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청약Home**)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또는 **청약Home** 모바일 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
일반공급	1순위(당해)	**2020.07.29(수요일)**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Home** 모바일 앱 - 전 은행 가입자
	1순위(기타)	**2020.07.30(목요일)** 08:00~17:30		
	2순위	**2020.07.31(금요일)** 08:00~17:30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 '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16.)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합니다.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 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Home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PT청약신청」⇒「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 · 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여권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제3차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 (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합니다.

■ **최하층 주택우선배정 신청**(만65세 이상인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에 한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하층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 청약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만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세대에 속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입양을 포함)를 둔 분 ※ 경쟁 시 ①,②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배정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인터넷 청약하여 신청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최하층(1층)주택 우선배정 신청서(별도 양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 : 희망자는 인터넷청약 시 최하층(1층) 우선배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자격입증 서류 및 최하층(1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서(별도 양식)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자격입증서류 : ①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②번 해당자-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③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 · 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 부여합니다.(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 예정입니다. • 인터넷 청약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유형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제외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 · 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 신청자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합니다.(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4조, 제58조에 따라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 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 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구비서류(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자는 청약 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에 한해 서류 제출기간내 접수완료하여야 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공통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견본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본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특별공급, 철거주택소유자 신청자 제외) 인터넷청약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제3자 대리 신청시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일반 (기관추천)	○		해당기관의 추천서	본인	대당 기관으로부터 사업주체에게 일괄 명단 통보 시 별도 추천서 등 불필요(추천명부로 접수)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공급 받으려는 자(수도군 거주자로 당첨 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견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본인 점수 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	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피부양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자녀	본인 : 만19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발급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발급
		○	임신증명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이행 확인각서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또는 자녀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 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세부내역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 초본	직계비속	만30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세부내역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자녀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기록대조일:존속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3년, 비속은 1년) -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동일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내역” 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혼인기간 중 내 출생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 시
		○	임신증명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이행 확인각서	자녀	견본주택 비치
		○	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견본주택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건강(의로)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 등 세부내역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구비 =서류(당첨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자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용은 불가합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계약 불가)
	○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일자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공급 받으려는 자(수도권 거주자로 당첨 시)
		○	1주택 실수요자 주택처분확인서	본인	기주택 처분조건으로 주택을 우선공급받은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제3자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본인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은 접수장소 비치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신청자)		
		○	신분증(신청자)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가점제 당첨자		○	주민등록표초본	존계 존 · 비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세부내역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직계존속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에 한함) 부양가족수에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직계존속의 주택소유여부 확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 증명서	본인/직계비속	만30세 이전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 존 · 비속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기록대조일:존속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3년, 비속은 1년) -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소형.저가주택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 등 세부내역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5. 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

■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다자녀가구, 신혼부부,노부모공양	· 일시: **2020.08.06.(목요일)** ·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0.08.17(월요일)~2020.08.19(수요일)**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7-1)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 지위를 인정합니다.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08.06(목요일) ~ 2020.08.15(토요일) (10일간)**

인터넷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08.06(목요일)**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를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기간 내에는 당첨자의 서류 접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계약이 해제 될 수도 있습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한 주택에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일반공급에 한함),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공급계약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지정계약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 공급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 조망, 사생활 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사용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불합리한 시공선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기타 당 아파트의 시공(설계, 마감재 등) 및 분양(견본주택, 홍보물 등)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국민은행	393301-04-071231	아시아신탁(주)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합니다.(예시: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 1020201홍길동)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101동 0203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203홍길동' 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추후 별도 안내 예정)을 통해 융자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시 이자후불제조건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고 대신 납부한 이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게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이자를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대신 납부하는 기한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사업주체가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그 이후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셔야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대한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18.09.13. 후속대책으로 발표된 『 주택시장 안정대책 』 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1주택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단, 추가 주택 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 지역에서 거주중인 만 60세 이상 부모 별거 봉양 등) 등의 예외 허용
-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당사(사업주체)에서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당사(사업주체)에서 지정한 입주기간내 대납이자를 일시 납부하여야합니다.(납부하지 않은 경우 입주가 거부되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대출용 자금에 대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전 입주 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3년 09월 예정(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합니다.)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타입)	59	74A	74B	84A	84B	84C	84D	84E	98	108
확장금액	16,100,000	17,900,000	17,900,000	19,800,000	19,800,000	19,800,000	19,800,000	19,800,000	21,600,000	23,800,000
계약금	1,610,000	1,790,000	1,790,000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2,160,000	2,380,000
잔금	14,490,000	16,110,000	16,110,000	17,820,000	17,820,000	17,820,000	17,820,000	17,820,000	19,440,000	21,42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 요망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전북은행**	**1013-01-3230054**	**아시아신탁(주)**

■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호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05.12.2.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합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당사에서 별도로 통지하는 기간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에서 통지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제시된 창호(유리, 프레임)의 강도는 본공사시 층수 및 위치에 따라 바람에 의한 영향의 차이로 인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상·하층 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 및 천장과 바닥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며,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과 커튼박스 및 천장 속 설비의 설치불가, 천장 높이 감소, 바닥 단차발생 등이(추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발코니 샤시 설치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에 렌지후드 및 화장실용 휀 닥트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합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설치되는 미확장 발코니 (1개소) 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 및 수전은 시공하지 않고, 배수구 위치 및 배수/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세대(비확장형 세대) 선택시 냉매배관, 드레인,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개별 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7. 추가 선택품목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옵션	실내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59	선택 ①	2대	3,520,000	352,000	3,168,000	
	선택 ②	4대	6,160,000	616,000	5,544,000	
74A	선택 ①	2대	3,520,000	352,000	3,168,000	
	선택 ②	4대	6,160,000	616,000	5,544,000	
74B	선택 ①	2대	3,520,000	352,000	3,168,000	
	선택 ②	4대	6,160,000	616,000	5,544,000	
84A	선택 ①	2대	3,740,000	374,000	3,366,000	
	선택 ②	4대	6,270,000	627,000	5,643,000	
84B	선택 ①	2대	3,740,000	374,000	3,366,000	
	선택 ②	4대	6,270,000	627,000	5,643,000	
84C	선택 ①	2대	3,740,000	374,000	3,366,000	
	선택 ②	4대	6,270,000	627,000	5,643,000	
84D	선택 ①	2대	3,740,000	374,000	3,366,000	
	선택 ②	4대	6,270,000	627,000	5,643,000	
84E	선택 ①	2대	3,740,000	374,000	3,366,000	
	선택 ②	4대	6,490,000	649,000	5,841,000	
98	선택 ①	2대	3,740,000	374,000	3,366,000	
	선택 ②	4대	6,490,000	649,000	5,841,000	
108	선택 ①	2대	3,740,000	374,000	3,366,000	
	선택 ②	4대	6,490,000	649,000	5,841,000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에만 시스템에어컨 설치가 가능하고, 발코니확장 미선택시 시스템에어컨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금액은 유상옵션 미선택시 적용되는 기본 냉매배관 2개소(거실, 안방)의 공사비를 차감하고 산정한 금액이며,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시 기본 매립 냉매배관 (거실+안방)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에어컨 개별설치 시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에어컨 개별 설치시 실외기실의 공간이 협소하므로 별도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게 제품이 설치됩니다.

• 선택형에 따라 실이 통합되는 경우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개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시스템에어컨은 [LG전자]제품으로 시공됩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델과 브랜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유상옵션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적용 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 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3연동 현관 중문	59	3연동 슬라이딩	1,536,700	153,670	1,383,030	
	74A		1,464,100	146,410	1,317,690	
	74B		1,609,300	160,930	1,448,370	
	84A		1,524,600	152,460	1,372,140	
	84B		1,524,600	152,460	1,372,140	
	84C		1,597,200	159,720	1,437,480	
	84D		1,597,200	159,720	1,437,480	
	84E		1,548,800	154,880	1,393,920	
	98		1,524,600	152,460	1,372,140	
	108		1,548,800	154,880	1,393,920	

※ 중문 관련 유의사항

• 현관중문은 주택형에 따라 크기가 다르게 시공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이 동질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벽과 틈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의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신청 시 주택형에 따라 디딤판의 크기, 디자인, 위치는 미선택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신청 시 주택형에 따라 벽체의 길이 또는 가구의 크기, 디자인, 위치는 미선택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 유상옵션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적용 주택형	선택안							비고
		유상옵션 미선택시 (무상설치형)	유상옵션 선택형						
		품목	품목	제조사	모델명	공급금액	납부일정		
							계약시(10%)	입주시 (90%)	
하이브리드 쿡탑	전타입	3구 가스쿡탑 (파세코)	하이브리드 쿡탑 (1구 가스 + 2구 인덕션)	SK매직	GRA-BI322H	1,089,000	108,900	980,100	
빌트인 양문형냉장고	전타입	일반냉장고 설치공간 (상부수납)	빌트인양문형냉장고	LG전자	S711SI24B	7,356,800	735,680	6,621,120	
빌트인 스마트오븐+ 하부후라이팬수납장	전타입	양문형 수납공간	빌트인 스마트오븐	LG전자	MZ385EBT	653,400	65,340	588,060	
빌트인 김치냉장고 +수납	84A,84B,98	김치냉장고 설치공간 (도어없음)	빌트인 김치냉장고+키큰장	LG전자	K221PR14BL/R	1,911,800	191,180	1,720,620	
빌트인 김치냉장고	84C,84D,84E	키큰장 (오픈장1)	빌트인 김치냉장고	LG전자	K221PR14BL/R	1,536,700	153,670	1,383,030	
	59,74A,74B, 108	키큰장 (오픈장2)	빌트인 김치냉장고	LG전자	K221PR14BL/R	1,464,100	146,410	1,317,690	

※ 가전제품관련 유의사항

• 가전제품 품목은 선택에 따라 미설치되는 기본제공 가전, 가구 등의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 설치 전 공급을 위한 매립호스가 설치되며, 이에 대한 시공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빌트인 스마트오븐 미선택시 후라이팬 수납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상판/벽 선택옵션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적용 주택형	선택안						납부일정	
		유상옵션 미선택시 (무상설치형)		유상옵션 선택형					
		주방/아일랜드상판	벽체	주방/아일랜드상판	벽체	모델명	금액	계약시(10%)	입주시(90%)
주방 마감재 (상판/벽)	59	인조대리석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엔지니어드스톤	젠틀그레이/앨파인엄버	1,548,800	154,880	1,393,920
	74A	인조대리석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엔지니어드스톤	골드캐년그레이	1,294,700	129,470	1,165,230
	74B	인조대리석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엔지니어드스톤	젠틀그레이/앨파인엄버	1,125,300	112,530	1,012,770
	84A	인조대리석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엔지니어드스톤	젠틀그레이/앨파인엄버	1,754,500	175,450	1,579,050
	84B	인조대리석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엔지니어드스톤	골드캐년그레이	1,476,200	147,620	1,328,580
	84C	인조대리석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엔지니어드스톤	골드캐년그레이	1,137,400	113,740	1,023,660
	84D	인조대리석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엔지니어드스톤	골드캐년그레이	1,137,400	113,740	1,023,660
	84E	인조대리석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엔지니어드스톤	젠틀그레이/앨파인엄버	1,185,800	118,580	1,067,220
	98	인조대리석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엔지니어드스톤	젠틀그레이/앨파인엄버	1,754,500	175,450	1,579,050
	108	인조대리석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엔지니어드스톤	젠틀그레이/앨파인엄버	1,802,900	180,290	1,622,610

※ 엔지니어드스톤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붙박이장 선택옵션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적용 주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품목	적용주택형	공급금액	납부일정	
			계약시(10%)	입주시(90%)				계약시(10%)	입주시(90%)
자녀 붙박이장	59	1,089,000	108,900	980,100	안방 슬라이딩 붙박이장	74A	5,057,800	505,780	4,552,020
	74A	1,064,800	106,480	958,320		84A	3,944,600	394,460	3,550,140
	74B	1,052,700	105,270	947,430		84B	4,295,500	429,550	3,865,950
	84A	1,294,700	129,470	1,165,230		84C	2,916,100	291,610	2,624,490
	84B	1,294,700	129,470	1,165,230		84D	2,916,100	291,610	2,624,490
	84C	1,089,000	108,900	980,100		98	4,477,000	447,700	4,029,300
	84D	1,367,300	136,730	1,230,570		108	4,477,000	447,700	4,029,300
	84E	1,052,700	105,270	947,430					
	98	1,294,700	129,470	1,165,230					
	108	1,294,700	129,470	1,165,230					

※ 가구관련 유의사항

• 본 공사 시 각종 가구의 손잡이, 하드웨어, 레일, 악세서리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에 따라 가구의 길이, 디자인, 위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59㎡,74㎡B,84㎡E 타입은 설계상 안방슬라이딩장 유상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단, 추후(계약전 등)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안내할 경우 반드시 해당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계약시 아래 계좌 입금 후 입금증 주택전시관 제출[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통합옵션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에 준합니다.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기타품목)	**전북은행**	**1013-01-3230054**	**아시아신탁(주)**

■ 유의사항

- 옵션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 대금은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공급금액은 선택에 따라 미설치되는 기본제공 가전, 가구, 마감재 등의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 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귀책으로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총 옵션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 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 또는 전체)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확장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 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2)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바닥재	바닥재(강마루,현관바닥타일,현관디딤판), 걸레받이, 발코니 바닥타일, 재료분리대 등(시멘트 몰탈포함)	바닥난방 + 시멘트 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세탁실 바닥방수, 화장실 방수, 발코니 우수선홈통
벽,천정	벽지 및 천장지(초배지 포함), 벽 및 천장 도장, 거실아트월(타일, 시트 등), 경량칸막이주방벽타일, 가구픽스판넬,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벽체 : 단열+석고보드/미장/콘크리트면처리 또는 시멘트몰탈 천장 : 천장틀+석고보드, 소방시설(설비, 전기), 월패드, 도어폰, 전기 배관, 배선 및 배선기구(콘센트, 스위치)류
조명기구	부착형·거치형 등의 조명기구 일체	전기 배선, 배관 및 배선기구(콘센트, 스위치)류
욕실	천장재(천장틀 포함), 타일(바닥,벽),위생기구(양변기,세면기,욕조,욕조틀 등), 샤워부스, 수전류, 욕실 환풍기, 욕실장, 액세서리, 코킹, 재료분리대, 욕실폰, 비데	조적, 방수, 미장, 설비배관, 전기 배관, 배선 및 배선기구(콘센트, 스위치)류
주방가구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각종 선반, 벽타일, 설비수전류, 주방TV폰, 주방가전, 일체(전기오븐, 렌지후드, 쿡탑, 음식물탈수기 등)	설비배관
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드레스룸장, 화장대, 침실붙박이장, 수납장, 각종 선반, 전동 빨래건조대, 보일러, 전열교환기, 각실 온도조절기	
창호	목재문(문틀, 문짝, 상부덧판, 문선), 창호철물일체(도어록, 경첩 등), 디지털도어록, 발코니샤시	목재문(공틀문포함)의 가틀(사춤 및 욕실문 하부씰 제외), 발코니 내부 PVC창호(시트지 제외), 세대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구 분	59.9316	74.4711A	74.3004B	84.9035A	84.8397B	84.1594C	84.7266D	84.0764E	98.4426	108.9315
금액	19,357,000	22,229,000	22,185,000	25,045,000	25,036,000	24,894,000	25,012,000	24,879,000	28,892,000	31,665,000

(4)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상기 마이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 · 품질관리 · 시공관리 ·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분양 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 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건축법」 제52조,「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쿡탑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가가 설치할 경우 소방법에 의거 가스 또는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 주거용 자동소화 장치를 설치하여야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 · 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은 잔금을 제외하고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잔금 납부 시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확장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8. 기타 주요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102,250,316,000원	제01282020-101-0006500호

※ 본 주택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합니다.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의무사항 적용 여부)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등을 위한 조치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친환경 인증보일러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설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원, VAT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 및 정보통신감리
회사명	(주)무영씨엠건축사무소	(주)21세기이엔지	(주)하나종합테크
감리금액	2,543,530,000	829,415,600	484,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 본 건축물은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주은종합건설, 시행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시공사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및 관리형토지신탁사업약정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 공급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합니다.

• 본 사업은 시행자인 주식회사 주은종합건설이 수탁자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건축주는 위탁자인 주식회사 주은종합건설이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 분양수입금계좌(해당 호실 가상계좌 입금 포함)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대금은 납부 효력이 없습니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은 주식회사 이데크건설이 부담하며, 수분양자는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신탁종료,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주식회사 주은종합건설과 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 주식회사 주은종합건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등 PF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신탁해지시에는 사업주체가 주식회사 주은종합건설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 등은 주식회사 주은종합건설에게 이전됩니다.
•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시행수탁자는 분양공급자(매도인)로서의 일체 의무(공급계약 해제/해지시 분양대금 반환의무, 소유권이전관련 업무, 입주지연 지체상금, 하자보수책임 등)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동 의무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관리형토지신탁사업약정)에 따라,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자가 관리형토지신탁계약(관리형토지신탁사업약정)에 의하여 부담합니다.
• 시행수탁자는 신탁계약 및 신탁사업약정에 의거, 현존하는 신탁계좌의 잔액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시행위탁자가 부담함을 계약자는 인지하여야합니다.
•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탁자의 분양대금반환 의무 등은 현존하는 신탁계좌의 잔액 범위 내로 한정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행수탁자의 고유 계정에 속하는 재산으로 위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시공사 주식회사 이데크건설이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시행수탁자가 관리형토지시탁계약에 따라 시공사를 대신하여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할 경우 입주지정일은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자동 연장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이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회사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시행수탁자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110111 - 3543801
시 공 사	주식회사 이데크건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염곡동)	110111 - 0327555
시행위탁자	주식회사 주은종합건설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74번길 7-21, 407-3호(청라동)	120111 - 1053008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에스에이치디홀딩스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50, 5층 에이동 48호(덕풍동, 현대지식산업센타 한강미사)	110111 - 5741867

9. 유의사항

■ 공통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공통사항	• 본 모집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본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단지는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이 용도별로 별도 구분되어 분양되는 시설이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타 시설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 계획(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등)은 추후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 본 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 타용도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합니다.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 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 사업부지 주변 주거단지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배치구조,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와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초등학생은 인근 학교로 배치 가능하며, 중·고등학생은 학교군 내 배치 가능합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근린생활시설 서측의 외부 실외기실에 상가용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한 주동 및 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옥상에는 상가용 실외기 및 환기팬 등의 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주동 및 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판매시설 상가용 실외기 등 설비는 서측 단지 부출입구 하부 지하1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는 소음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에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한 직, 간접(배기설비)적인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의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반비용은「동법 제45조」에 의거하여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및 준공 시 확정측량,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공통사항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일부세대는 시공 개선 및 품질 관리를 위한 현장 내 공사용 견본세대(목업)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중도금 대출,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외국인이 상속·경매 등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위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취득세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및 공법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견본주택(홍보관 포함)에 설치된 배치도, 평면도 및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시 설치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으며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에 표현된 내용(부대시설, 드라이에어리어(DA), 한전패드,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레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당첨 및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어야합니다. • 계약자는 분양안내, 유의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가 공급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공급계약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전국일간지에 분실공고를 내고 2주일 후 공증 받은 위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고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사업관계자 (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 소정의 양식에 따른 분실각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 할 시에만 공급계약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단, 공급계약서 재발급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 일부 호실 또는 부대복리시설 전체 또는 일부는 현장사무실 및 창고, 샘플실 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의 협의 및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분양대행사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대행사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의 결정에 따르며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변경시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사업주체+계약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공통사항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전기. 통신 단자함 등의 설치위치 및 수량, 사양,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각종 기구(조명/배선기구/전기 통신함 등)의 설치위치 및 재질, 사양이 계약자에게 개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또는 해당 민원으로 인한 행정관청의 공사중단, 권고 등으로 시공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조정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기관에 대해서는 지체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공사도중) 전 세대내 무단출입 및 세대내부의 임의적인 촬영을 금지하며, 무단 촬영물의 유포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건축 품질 및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의 경우 공기 미순환 등으로 인해, E/V홀 내부 및 지하층으로 연결된 계단실, 지하주차장 외벽 및 구조물 등에 결로 및 습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각 용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조경 및 공용시설에 장비 반입구, 한전소유의 전기설비 설치 공간(한전패드), 도시가스 관련 시설, 맨홀, 우수조, 실외기, 급배기구 및 쓰레기 수거장, 재활용 창고(분리수거 공간) 등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냄새, 진동, 소음, 해충, 사생활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지상 1층 외부공간은 조경시설 등으로 소음, 분진,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시 소음 측정으로 인해 도로에 면한 면 또는 일부 방음벽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오피스텔, 근생시설, 판매시설의 전기실, 기계실, 방재실, MDF실의 건축물 구획은 해당 실별로 1개소로 통합 구성합니다. • 아파트, 오피스텔, 근생시설, 판매시설의 중앙감시장비 (홈네트워크, 원격검침, 주차관제, 비상벨, CCTV, HEAD END, 태양광발전, 전기차 충전설비, 승강기 감시반등)는 지하1층 방재실에 각 시스템별로 통합 구성합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는 관련 법정 규정에 의해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마감재	• 본 모집공고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생산일자, 생산공장(지)에 따라 이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 중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나 본 시공 시 발코니 확장 및 확장 시 포함품목은 별도 계약사항임을 확인합니다.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한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 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 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 용량, 탑승위치, 주동입면 등)은 사업시행인가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견본 주택에 미건립된 세대의 경우 계약 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다른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 및 숙지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제시된 창호(유리, 프레임)의 강도는 본 공사 시 층수 및 위치에 따라 바람에 의한 영향의 차이로 인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 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평면도, 사진 등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확인 및 양지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연출용 설비 배관, 배선포함),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용검사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단지모형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등)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조명, 식재,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옥탑부 디자인, 주동/창호형태, 벽체마감, 디테일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동안 공개 후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전한 뒤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위탁사)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 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게 설치됩니다.(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용 소방시설임)
분양홍보물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외벽의 줄눈 또는 리브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아파트동 및 부대복리동, 단지 등 외부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 주출입구에 설치되는 문주의 형태 등은 본 공사시 시공성 및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주차장 출입경사로 상부의 캐노피의 설치여부 및 형태 등은 면적산정 등 인허가 사항과 본 공사시 시공성 및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미설치 또는 일부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카달로그에 표현된 조감도, 투시도, 평면도, 배치도, 조명, 조경, 시설물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모형제작 및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시공시 구조 등의 안전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 표현된 단위세대 평면 등에 표현된 실의 규모 관련 치수 또는 면적 등은 제작 시에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아파트 외벽 색채는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DA, 한전패드, 조경 및 식재, 조명,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 완충녹지, 공원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점검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전에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확한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3년 9월경(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설계유의사항

구 분	내 용
면 적	• 본 사업부지 북측 및 서측 일부의 도로 확폭 부분과 동측의 감속차로 부분은 기부채납(예정)되며, 그에 따라 건축물의 기준높이 완화 적용되었고, 해당 기부채납 면적은 사업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준공 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이 복합되어 있는 단지로 용도별 대지지분은 용도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으며, 각 용도별 별도 구획 및 분할이 불가하며,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내 부대시설 중 지상1층 경비실의 면적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지하1층 경비실 면적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의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본 단지내 복리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입주자 회의실, 독서실은 오피스텔 201동, 202동 1층에 위치하여 오피스텔 해당동과 진입홀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해당 진입홀의 면적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본 단지내 부대시설 중 지하주차장의 면적은 각 용도별 계획주차대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으며, 사용상 편의를 위하여 지하1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지하2~5층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용도로 사용하여야합니다. 그에 따라 주차장 이용에 제한을 주거나, 개별적인 소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구조 및 성능 개선 등을 위해 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용면적 및 서비스면적, 내부구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주자의 실제 공급면적(주거공용면적, 계단실면적 등), 계약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지하주차장), 대지지분 및 전용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공용부 면적(계단실,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설비공간 등)은 본공사시 현장 여건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의 공용면적(계단실, 부대복리시설, 주차장)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합니다. • 일부 타입의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 등으로 본공사 시 발코니 실사용 면적 등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계변경	• 내부 도로 및 조경선, 조경공사, 건물외벽 마감공사 등을 포함한 단지 공사,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인·허가 과정이나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각종평가(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한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 단지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두께 및 현장여건에 따라 주동 저층부 석재적용 구간에 해당하는 세대의 창호사이즈는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도시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내부 디자인은 현장 여건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구조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향후 구조형식과 구조부재의(기둥, 보 등) 크기, 위치, 개수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층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유효높이 확보를 위하여 일부 기둥, 보와 같은 구조체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용 D/A, 제연휀룸 D/A,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의 지상 돌출물 및 시설물의 위치 및 형태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됩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여건에 따라 콘센트, 조명스위치 등의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분양가에 포함되는 항목(가구, 각종 등기구, 전자제품 등)은 개인적인 요구 및 취향에 따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발코니 확장여부에 따라 본공사시 감지기,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창호 사양 및 크기, 개폐 방식, 개폐 방향, 브랜드, 하드웨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사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가스정압시설 및 전기변압시설 등의 시설물이 입주자 동의 없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은 건물 외부에 설치되며, 설치 계획에 따라 내부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구성 및 평면/입면 구조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변환경	기부채납 대지 및 시설	• 본 아파트 단지에 면하여 일부 확폭되는 도로의 조성은 사업주체가 시행하고 추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며, 확폭되는 도로의 면적은 사업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본 사업부지 북측 및 서측 일부 도로는 관계법령(건축법제2조제1항11호에 따른 4M도로)에 미달되는 도로로서 법령상 유효폭(4M) 확보를 위해 일부 필지에 한해 별도 기부채납(예정) 되며, 도로 반대편에 접한 대지(現 구 주택가)의 후속 개발이 이루어져야 4M도로 확보 가능합니다. • 본 사업부지 동측 차량출입구 우측부분 일부는 주차장 진입을 위한 감속구간 확보(약 1.5m)를 위하여 별도 기부채납(예정)됩니다.
	공개공지 등	• 본 단지 내 남동측 지상1층과 북서측 지하1층에는 공개공지가 설치되며, 해당 면적에 대하여 구분 및 분할, 소유 및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내 설치되는 공개공지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서 단지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입주민(실사용자 포함)만의 사용을 위한 외부인 차단 출입시설물 등의 설치행위를 일체해서는 안됩니다. • 단지배치 및 설계계획상 일부 시각적 간섭 및 공용시설 조명에 의해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단지주변도로	• 본 구역 주변 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폭:약 8m) 도로는 차도 및 보행 가능한 보도(단지내 보도 포함)가 설치되며, 단지내 지하주차장 출입구 북측구간은 주차장 진입을 위한 감소차로(1.5m)가 설치됩니다. • 단지 북측 및 서측 일부(폭:4m-기부채납시) 도로는 단지내 보도를 포함하여 약 5~5.2m 보차혼용도로가 설치되며, 단지와 도로간 레벨차이 있습니다. • 단지 남측(폭:약 35m) 도로는 차도, 자전거도로 및 보행 가능한 보도가 설치되며, 해당 도로를 통한 차량의 진입은 불가하며, 지하1층으로 보행진입이 가능합니다. • 단지 서측 도로는 본 단지경계와 맞닫는 막다른 보차혼용도로이며, 단지와 도로간 레벨차이가 있으며, 별도의 차량 출입구는 없습니다. • 단지 서측의 막다른 도로에 남측도로와 연결되는 보행로가 설치되나, 인접부지 내에 설치된 보도로 사용에 제약이 발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동측 도로는 약 1.7m, 북측 도로는 약 5.7m, 서측 도로는 약 1.6m의 경사가 있으며, 해당 도로 이용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세대 및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매연으로 인하여 환경성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주차구획, 주차 진출입구, 자전거주차장 등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의하여 결정 된 사항입니다.
	인접대지	• 단지 동측에는 8m 도로 맞은편으로 약 11층 이하 규모의 오피스텔 및 상가, 빌라 및 주택 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조망 등의 환경성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는 약 지상5층 규모의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가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조망 등의 환경성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에는 약 지상14~15층의 오피스텔 건물과 지상10층 이하의 상가 및 오피스 건물이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조망 등의 환경성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에는 4m 도로 맞은편으로 약 15층 이하 규모의 오피스텔 및 상가, 빌라 및 주택 등이 위치하며,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조망 등의 환경성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경계	• 단지 북측과 서측 일부는 단지와 도로간 레벨차이로 인한 옹벽이 설치됩니다.

		• 단지 서측 일부와 남측은 단지와 인접대지간 레벨차이로 인하여 옹벽이 설치됩니다. • 본공사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본 단지와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간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옹벽, 화단 등의 구간 및 높이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대지와의 레벨 관계에 의하여 일부 출입구 부분에 계단 및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니 계약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인허가 및 관련법규	•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2018년 8월 23일 최초 건축심의완료(2018년 3월 28일 접수), 2018년 6월 25일 최초 사업계획승인완료(2018년 10월 19일 접수)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 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접수일 또는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 본 단지는 도로의 기부채납 및 공개공지 설치를 통하여 건축법 제43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과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30조제3항 등에 따라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 준공 전 또는 후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면적의 변경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의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들의 요청, 입면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이 2018년10월19일 이므로 승강기의 정원산정, 안전기준, 완성검사기준은 개정된 행정안전부고시(제2019-29호)가 아닌 종전의 승강기 안전기준(제2018-22호)을 적용합니다. • 초고속정보통신 및 홈네트워크 건물인증 관련하여 해당 건축물은 미인증 건축물임.
단지	저층세대	• 단지내 저층세대는 단지 내 운동시설, 휴게소, 광장, 어린이놀이터, 수공간, 공개공지 등을 등이 설치되며,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합니다. • 어린이 놀이터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합니다.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과 제연을 위한 시설물(DRY AREA), 쓰레기 분리수거함(102동 및 103동 사이 1개소 설치)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 및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악취, 조명 등에 의해 사생활권 및 환경권과 조망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 상부의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간섭 및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상부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층세대	• 아파트 및 오피스텔 지붕, 옥탑층 및 측벽에는 의장용 구조물, 태양광 구조물(아파트에 한함), 안테나, 이동통신중계기, 피뢰침, 경관조명 및 시행자 또는 시공사 BI 사인물 등이 설치되거나 또는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 또는 최상층 세대는 소음, 눈부심, 환경적 영향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비용은 전체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변경	• 본공사 시 시공여건 고려 혹은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색상, 옥상장식물,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디자인(전반), 문주, 지하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문주, DA, 옹벽 등), 조경디자인(식재계획, 조경 바닥 디자인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DECK PLATE 등) 등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공법 등이 부위별로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일부 입주자의 개인 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주동 동출입구 및 세대 저층부 3개층(필로티 외측 벽면 포함, 필로티 내측 벽면과 계단실, 공용홀 제외)은 석재마감이 적용되며, 지하주차장 외부 노출데크 벽면, 단지 외곽 옹벽, 단지내 단차 부위, DA 등 외부시설물,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입면 부위는 석재뿜칠 및 일부 석재 혼합마감이 적용됩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디자인, 위치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출입구	• 본 단지 동측에 주출입구 1개소(보행자 및 차량출입가능, 동측 공개공지와 연계), 북측 및 서측에 부출입구 각 1개소(보행자 출입가능, 계단식), 남측에 부출입구 1개소(보행자 출입가능, 계단식) 총 4개소의 단지 출입구가 설치되며, 단지 특성상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합니다. • 본 단지 동측에는 차량 출입구가 설치되며, 해당 출입구와 인접한 주출입구의 보행로간 경계부에는 차량 진입 및 안전을 위한 볼라드가 설치됩니다. 문주는 동측 주출입구와 북측 부출입구에 각 1개소씩 총 2개소 설치되며, 북측 부출입구의 문주는 계단 및 DA구조물의 통합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 본 단지는 지상의 차량통행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됨에 따라 차량 출입구로 진입시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공동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비상차량, 쓰레기수거차량, 정화조 청소차량 등 비상 또는 관리 등 일부 특수한 경우만 차량의 지상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입주 후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간 협의를 통해 지상 출입 차량 범위를 결정하여야합니다. • 본 단지는 102동 앞 공개공지와 인접하여 통학차량 정차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 및 저층세대는 소음, 매연 등으로 환경적 영향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외부동선시설	• 단지내 지상의 도로(차도, 보도)는 긴급 및 서비스(이삿짐, 소방차량, 쓰레기차량 등) 차량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단지		단지와 외부인접 도로의 단차를 고려하여 부출입구는 계단으로 계획됩니다. • 단지 동측 공개공지에는 지하1층 판매시설 주차장 및 지하2층 아파트, 오피스텔 주차장과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이 설치됩니다. • 단지 남측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을 통해 지하1층 주차장 및 판매시설로 진입이 가능하며, 근생용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통해 지상1층 단지와 공개공지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입면디자인	• 단지 환경디자인 개선을 위해 주동 및 공용부 입면 일부 구간에 재료(유리 포함)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동출입구	• 동 출입구(필로티 포함)(추가)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폭, 높이)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 동 출입구의 입접세대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필로티	• 101동 1호열 및 4호열과 102동 5호열의 지상1층에는 1개층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는 단지와의 약 0.8m의 단차로 인하여 계단을 통해 진입 및 통행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는 해당 동의 출입구 및 공공의 통행로 및 자전거 보관소로 이용되며, 해당 101동 및 102동 저층부 세대 및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보관소	• 자전거 보관소는 101동과 102동의 지상1층 필로티와 지하 2~5층 아파트 주출입구 인근에 설치되며,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5층 자전거 보관소는 103동 주출입구 통로상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통행 및 미관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무인택배 보관소	• 오피스텔과 통합하여 1개소 설치하며 택배함 수량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로 설치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102동 및 103동 사이에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용으로 1개소가 설치되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해 RFID수거함이 설치됩니다. • 지하2~3층 103동 하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동 재활용품 보관소가 각 1개씩 설치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재활용품 보관소 이용에 관련하여 입주 후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간의 협의에 따라 사용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	• 각 동의 계단실의 형태는 전용면적이 동일하더라도 동 형태에 따라 설비PD,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의 형태 및 면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해당 동에 따라 각각 다르고, 외부에 면하는 창에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수동으로 개폐시 사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101, 103동(층당 4세대 조합)은 층당 2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102동(층당 5세대 조합)은 층당 3대씩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엘리베이터의 정원 산정 기준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시행 2017. 7. 26.)에 따라 산정되어 그에 따라 본공사시 시공될 예정임. 단, 본 공사 시 개정된 관련규정을 따를 경우 인허가시 기 승인된 정원 산정 기준과 상이하게 시공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모형 및 도서를 통하여 엘리베이터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전실 및 홀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 본 건물은 복합건물로서 지하1층~지하5층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용도별로 동선을 분리하여 사용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원활한 교통통제 및 운영을 위하여 혼용하여 이용될 수 있으며, 아파트 주차장은 지하2층~지하5층에 계획하였으나 오피스텔과 혼용하여 운영됩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지하주차장 사용구획 및 주차대수가 변경 될 수 있으니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 347.7대를 근거로 총 405대로 계획하였습니다. • 단지내 공동주택용 주차장은 지하2~5층에 설치되어 오피스텔 주차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용 주차장은 지하1층에 별도 설치되며 아파트 입주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지상1층 주차관제설비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이용자와 겸용으로 이용하며, 지하1층 주차관제설비는 오피스텔 이용자와 겸용으로 이용합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지하1층 제외)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 통합형이며, 지하층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평면 계획에 따라 주차대수의 배분은 주동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일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 등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 또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에 계획된 창고는 주차장에 부속된 공용창고로 입주민 창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공용부 통로 공간, 계단실은 비난방·비단열공간으로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유효높이 확보를 위하여 일부 기둥, 보와 같은 구조체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 등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높이 2.7m 차량은 지하1층에만 진출입이 가능하며, 높이 2.3m 미만의 차량은 전층 출입이 가능 하오니 이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주차공간은 높이 2.1m

단지		미만의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며, 일부구간은 건축물의 구조 및 기계, 전기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천정고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비공간	• 아파트 및 오피스텔 옥탑층에 태양광 구조물(아파트에 한함), 위성 안테나, 이동통신중계기,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또는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는 전문업체의 검토를 통해 적정한 위치에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환경적 영향과 소음발생,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4~5층의 101동 및 102동에 인접하여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및 정화조 등이 위치하며, 장비등의 운용에 의해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및 지상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제연실 포함) 및 정화조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화조는 지하4~5층 101동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접한 101동의 옥상층에 아파트, 오피스텔 공용 정화조 배기덕트,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공용 정화조 배기덕트가 각각 설치됩니다. 이에 따라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정화조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 공용으로 설치되어 사용됩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라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DA	• 단지내 공개공지, 아파트 101동 및 102동 배면부, 오피스텔 201동 및 202동 배면부, 북측 부출입구, 쓰레기분리수거장 인근에 지하주차장 및 기계/전기실 등의 환기 및 제연을 위한 DA(환기탑)이 설치되며, 인접세대 및 저층부 세대와 단지 시설물 이용시 소음 및 진동, 냄새, 풍압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 단지내 조경식재, 야간조명, 홈네트워킹 등 단지내 공용설비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 규약에 따릅니다.
	이사시 유의사항	• 입주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및 크기, 평면 형태, 입면 장식, 돌출발코니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하여,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시설이며, 용도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등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주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 중 경비실은 계약면적 상 지상1층 경비실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지하1층 경비실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의 공동시설이며, 단지의 특성 상 용도별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간 협의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복리시설 중 경로당, 어린이집, 입주자회의실, 독서실, 휘트니스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등에 따라 설치되는 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로써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간 협의에 따라 타용도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이용에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기타 시설물의 설치로 인접세대에 일조, 조망, 소음, 진동, 냄새, 해충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기물보관시설, 자전거 보관대 등이 계획되었으며, 복리시설은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 입주민 회의실, 독서실이 설치되며, 일체의 운영 및 보안, 유지 관리는 입주민 자치적으로 하여야합니다. • 피트니스센터는 102동 남측 근린생활시설의 지상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이용자와의 접촉, 소음 등이 발생하거나, 동별 위치 및 용도에 따라 거리가 다소 멀어 접근이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경로당 및 어린이집과 입주민 회의실은 오피스텔 201동 지상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동별 위치 및 용도에 따라 거리가 다소 멀어 접근이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독서실은 오피스텔 202동 지상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동별 위치 및 용도에 따라 거리가 다소 멀어 접근이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는 지하1층, 경비실은 101동 지상1층과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동별 위치 및 용도에 따라 거리가 다소 멀어 접근이 불리하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된 주동 및 인접한 세대의 경우 입주자 및 사용자의 해당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눈부심, 냄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적 영향과 사생활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는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보수를 위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단지		계획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휘트니스센터, 입주민회의실, 독서실의 내부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에서 시공하며, 가구 및 가전, 소모집기 및 비품은 별도 제공되지 않으므로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합니다. • 101동 및 102동 동측 단지 외곽에 공개공지가 설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간으로 임의로 시설물을 제거하거나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와 인접한 101동 및 102동 저층부 세대 및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개공지에는 휴게시설인 파고라와 놀이시설이 설치되며,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통학차량 정차장이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폐기물 보관소는 102동과 103동 사이에 설치되며, 102동 및 103동 저층부 세대 및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 해충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공개공지에 설치되며, 여건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으로 대체되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설치 또는 미설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냉방 실외기는 해당시설 지상1층 외부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되며,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 본 단지 지상27층 및 302호실 규모의 오피스텔이 북측에 2개동(201동, 202동)이 위치하며, 단지 특성상 부대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여야하며,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 102동 남측에 근린생활시설(지상10층)이 설치되며,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 및 이용자 및 입점업종에 따른 조명, 소음,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하여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매시설	• 지하1층에 판매시설이 설치되며,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 및 이용자 및 입점업종에 따른 조명, 소음, 진동, 냄새 등으로 인하여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위세대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 입니다. • 59㎡,74㎡B,84㎡E 타입은 천정형 전동빨래건조대 설치가 어려워, 빨래를 걸 수 있는 빨래건조겸용 세탁선반이 설치 됩니다. • 59㎡,74㎡A,74㎡B,84㎡C,84㎡D,84㎡E,108㎡ 타입은 김치냉장고공간이 제공되지 않아 주방에 기존에 보유한 김치냉장고 설치가 어렵습니다. • 59㎡,74㎡A,74㎡B,84㎡A,84㎡B,84㎡C,84㎡D,84㎡E 타입은 세탁공간이 협소하여 17kg이상의 드럼세탁기를 설치할 경우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59㎡ 타입 공용욕실은 사이즈가 협소하여 욕조사이즈가 성인이 사용하기에 어려울 수 있으며 세면대 밑에 하부장이 있는 타입으로 설치되어 하부장 측면에 휴지걸이가 설치되어 수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84㎡C,84㎡D 타입은 욕조가 욕실2(부부욕실)에 설치되며 (견본주택의) 84㎡B 욕실1(공용욕실)의 마감재 및 사양이 설치되며, 샤워부스는 욕실1(공용욕실)에 설치되며 (견본주택의) 84㎡B 욕실2(부부욕실)의 마감재 및 사양이 시공됩니다. • 세대 내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 등 공간계획은 일반적인 사이즈로 계획하였으나 규격 등의 차이로 인해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반드시 실제 크기를 확인해야합니다. • 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불가하며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부층과의 바닥면적차이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에 형성되는 외부공간은 공용공간으로써 계약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공간으로, 입주 후 해당 외부공간이 면한 해당층 세대가 이용할 수 있으나 내부공간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유지관리를 위하여 세대를 통해 관리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건축평면 및 입면형태에 따라 해당 외부공간의 형태가 달라지거나, 바닥의 단차, 난간, 배수처리 방법은 본 공사 시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당세대의 외부공간 이용에 대하여 다른 세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부층과의 바닥면적차이로 인하여 최상층에 형성되는 외부공간에는 동파발생 등에 따라 별도 수전을 설치하지 않으며, 입주 후 임의로 수전을 설치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하자보수는 입주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부층과의 바닥면적차이로 인하여 최상층에 형성되는 외부공간은 외측에 직접 노출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으며, 그에 따른 안전을 위하여 철재 난간을 설치하나 통풍 및 시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락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위세대	공통사항	• 59㎡ A/ 74㎡ B/ 84㎡ E,98㎡ / 108㎡ 은 건립세대 84Am² 기준으로,74㎡ A/ 84㎡ C/ 84㎡ D은 건립세대 84㎡ B 기준으로 디자인 컬러가 적용 되오니 계약시 확인 바랍니다 • 하부층과의 바닥면적차이로 인하여 최상층에 형성되는 외부공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빗물이나 생활용수에 의하여 하부세대에 일부 선홈통 설치 및 소음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부층과의 바닥면적차이로 인하여 최상층에 형성되는 외부공간의 외부 마감재 설치 유뮤에 따라 해당 외부공간의 면적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에 보일러와 수전 및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대내 올림공간(우물천정)의 천정고는 상부세대 및 당해층 설비배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현장은 방화지구로 관련법규에 따라 일부 단위세대 내 천정에 소화설비인 드렌처가 설치되며, 임의로 철거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또한 작동 시 발생되는 수손피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다소 축소 또는 확대 되어 시공 되어질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 사이즈에 따라 실외기실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구매 전 해당 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에어컨 작동 시 방충망을 닫고 사용 하는 경우에는, 냉방 성능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 선홈통은 발코니, 실외기실 또는 PD내에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 포함)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사양,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 되었습니다. • 단위세대의 환기시스템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전열교환장치 또는 동등이상의 사양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발코니 및 실외기실 등에 전열교환기 덕트, 스프링클러 배관, 드렌쳐설비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임의로 철거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 및 사양,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전기분전반/통신단자함의 설치 위치 및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주방의 기본사양 가전류 외 고용량 가전제품(전기인덕션 등)의 추가 설치는 사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 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에 따라서 선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상부 덕트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보일러, 전열교환기, 실외기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손잡이 개폐방식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저층부 3개층 배수배관이 기준층보다 1개소 더 설치 됩니다. • 본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 실별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창호 및 외기노출벽면마감재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접 세대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및 침실, 거실, 주방 등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 세대의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장 깊이, 커튼박스 깊이, 등박스의 크기 및 깊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화장실(샤워부스 포함),현관등의 단차 및 타일 줄눈의 모양 및 크기는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내부마감재(마루재,타일,도배지,시트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 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훰발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 상부층의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미 확장 발코니 배수를 위한 배수관이 하부층 세대 천장 속 또는 벽면 등에 설치되거나, 외부에 배수를 위한 선홈통이 설치되어 소음, 누수 등의 하자발생 및 외부 미관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대피공간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등 관계법령에 따른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또는 상·하층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 및 천장, 바닥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 세대 중 인접세대 또는 상·하층세대가 발코니를 확장한 경우 세대 간 여건에 따라 해당세대의 미확장 발코니 벽면 및 천장, 바닥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결로발생 및 일부 벽체 및 천장, 바닥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입주 후 임의로 단열재 등을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의 발코니에는 발코니전용 단창 또는 투시형 난간이 설치됩니다. • 아파트 발코니 내 세탁기 설치 등으로 인한 단차 발생구간은 낙상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피시설	• 세대내 설치되는 소방관 진입창 및 완강기가 설치되는 발코니 또는 창호는 화재 발생시 대피 및 소화활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곳이므로, 물건적재 및 기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합니다. • 소방관 진입창 및 완강기 설치부분 창은 향후 입주 후 개별적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파손 등의 경우 관련 법규 및 인허가사항에 적합하게 보수 또는 변경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2~19층(동별 및 세대 호실별 설치 층수 상이함) 호실별 발코니 또는 거실 중 1개소(102동 74B타입에 한함)에는 소방관 진입창과 지상3~10층 호실별 발코니 중 1개소에는 피난용 완강기가 설치되며, 같은 타입의 세대라도 해당 동 및 층에 따라 설치여부가 상이하며, 향후 입주 후 개별적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완강기가 설치되는 부분의 하부에는 피난을 위한 발판(벽부 고정형 접이식 발판 또는 발판 겸용 완강기함) 이 설치 또는 비치되며, 향후 입주 후 개별적으로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완강기 설치 위치는 홀수층, 짝수층에 따라 교차되어 설치됩니다. • 세대내 완강기 및 소방관진입창(추가)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 중 여닫이창은 평상시 개방각도가 30° 이내이며, 비상시 수동으로 턴첵을 조정하여 90° 이상 개방하여야합니다. • 세대내 소방관 진입창은 소방관련 심의의견에 따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이색의 방충망 프레임을 설치, 여닫이창인 경우 한변의 길이가 20㎝인 적색 역삼각형의 식별표기를 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소방관 진입창에 대하여 외부 식별을 위한 표현 방법은 본공사 시 인허가청 및 소방서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	• 발코니 확장 선택 여부에 따라 벽체 및 천장 등에 단열재가 설치되어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로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구공사	• 주방가구 및 신발장, 붙박이장 등의 가구 뒷면 및 바닥, 천정에는 바닥마감재 및 벽지, 천정지 등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거실의 아트월 설치 및 복도 등의 벽체의 마감 두께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길이는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의 마감은 설치 후 시간경과에 따라 노후화가 발생되며, 자외선 및 각종 세제, 화학약품 등에 의해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가구 악세서리, 힌지 등의 가구철물은 제품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호공사	• 세대내 설치되는 창호, 유리 및 손잡이의 형태, 열림방향, 색상, 제조사 등은 본 공사 시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갤러리 (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 등은 금속성 재질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므로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니며 입주자가 관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철재문 및 방화문류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디테일은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 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침실별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여닫이창호는 안전을 고려하여 개방각도가 30° 이내로 개방되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개방각도가 축소되어 개폐 및 환기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공사	•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전동식빨래건조대가 미설치되고 조명기구로 대신합니다. 견본주택 세대내 설치된 전기기구(홈네트워크, 조명기구, 조명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등) 설치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유상옵션	공통사항	•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및 선택제에 따라 설치되는 등기구의 위치 및 콘센트, 스위치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 www.michuhol-theliv.com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547-1 / ☎ 1811 - 0005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 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